

의안번호	제44호
의결 년월일	2026. 4. 22. (제337회)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출자	금산군수
제출년월일	2026. 4. 10.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	------

제출년월일 : 2026. 4. 10.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정이유

- 장애인 개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게 집중되어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018)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3025)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7536)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 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자문)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나.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사업), 안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단위: 원)

연 번	내 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154,200,000
1	운영비	90,000,000 * 1식	90,000,000
2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지원	50,000,000 * 1식	50,000,000
3	종사자 직무수당	3,600,000 * 1식	3,600,000
4	종사자 복지수당	3,600,000 * 1식	3,600,000
5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7,000,000 * 1식	7,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직무수당·복지수당 : 도비 20%, 군비 8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지원 및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도비 30%, 군비 70%

3. 작성자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장 김 구 산(☎ 041-750-41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54,200	106,284	108,410	110,578	112,789	592,261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도비)		36,540	21,971	22,410	22,858	23,316	127,095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비)		117,660	84,313	86,000	87,720	89,473	465,166
세 출		154,200	106,284	108,410	110,578	112,789	592,261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154,200	106,284	108,410	110,578	112,789	592,261
재원 조달		154,200	106,284	108,410	110,578	112,789	592,261
의존 재원	소 계	36,540	21,971	22,410	22,858	23,316	127,095
	도비보조금	36,540	21,971	22,410	22,858	23,316	127,095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7,660	84,313	86,000	87,720	89,473	465,166
	군비	117,660	84,313	86,000	87,720	89,473	465,16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